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3. 2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70호로 2022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등(안 제2조～제3조)

나. 회의 및 직원(안 제4조～제5조)

다. 인수위원회 예산·활동 지원 및 자문위원(안 제6조～제7조)

라. 수당,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운영세칙 (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2. 10.～3. 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직 당선인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원활한 인수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영등포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 외에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 행정안전부에서 인수지원단의 구성·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왔음.
- 그러나 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직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등을 공포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3. 2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71호로 2022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기간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이체 등의 방식에 의한 납부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2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을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세하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한 조항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기인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 되어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되므로 해당시설에 감면이 필요하여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2.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임시용(가설) 건축물에 대해 감면규정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 세입에는 영향이 없음.

-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전자송달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함.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방식, 전자송달 방식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선별진료소 임시(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과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조례안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1.6.8 신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생략

⑧ 생략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생략
5. 생략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